

#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년월일 : 2019.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으로 2019년 기준 최저보험료 14,700원이 2020년에 15,17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 변경이 필요한 동시에 향후 반복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비하여 지원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로 변경 필요

##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변경(안 제3조)

- 부과금액 월 15,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10. 15 ~ 14. 4)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담당관-1111, 2019.10.10.)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담당관-1111, 2019.10.10.)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주민복지과-4638, 2019.09.30.)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월 15,000원”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p> <p>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p> <p>2.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 ----- ----- ----- -----.</p> <p>1. ----- 보 ----- 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p> <p>2.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발췌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02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550원

## □ 노인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노인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851로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매년 변경됨으로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복지과장 고흥재
연락처	(033) 330 - 2188